

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약관

제1조 (회원)

-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② 본인회원이란 신용협동조합에 자유입출금식예금(이하 “결제계좌” 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 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신협에서 신협체크카드(이하 “카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결제계좌에서 현금의 인출 등 카드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인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신협으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제2조 (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고, 제3자로 하여금 카드를 보관·소지 또는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신협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유효기한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신협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 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전 각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 ② 카드의 유효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신협은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회원에게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 ③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이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협에서 집니다.
- ④ 재발급 등으로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4조 (카드의 이용)

-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신협과 제휴하고 있는 국내(해외)카드사의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신협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용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④ 신협은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이나 신협의 정책을 회원에게 제18조의 변경절차에 따라 별도 통지후 회원의 해외이용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카드의 비밀번호)

- ① 회원은 카드비밀번호를 신협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신협이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협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 현금인출시 사용할 비밀번호는 그 외 거래시 사용할 비밀번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신협은 자동화기기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신협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카드의 이용한도)

-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래한도는 신협이 정한 한도 범위내에서 회원이 선택하여 정하며 동 한도는 이용시점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범위내(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카드이용한도는 신협이 관리하며, 회원의 요청으로 특별승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자동화기기의 이용)

- ① 회원은 카드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현금카드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② 국내 및 해외겸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해외 이용시 VISA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의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VISA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 외에 신협이 해외 서비스 수수료(해외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8조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

- ① 신협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카드발급수수료는 카드발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협은 별도로 특정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신협 또는 신협과 제휴하고 있는 국내(해외)카드사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및 카드를 추가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 별도의 연회비 또는 카드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협은 사전에 청구내용, 청구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 ③ 연회비 및 카드발급수수료가 약관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는 경우 제18조의 변경절차에 따라 안내합니다.

제9조 (이용대금의 결제)

- ① 신협은 카드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록하여 드립니다.
- ②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정상결제 여부에 대하여 회원 또는 가맹점이 별도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신협은 해당 거래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제대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수 있습니다.
- ③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신협과 제휴한 해외 카드사의 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카드이용대금(해외 자동화기기 이용대금 포함)은 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신협과 제휴한 국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고고시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신협이 부담합니다.
- ④ 제3항의 청구금액에는 VISA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신협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신협이 회원에게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신협이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text{거래미화금액} \times \text{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times \text{전신환매도율}$

** $(\text{거래미화금액} \times \text{신협이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times \text{전신환매도율}$

제10조 (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 ① 회원(또는 대리인)이 카드이용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② 신협은 회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③ 회원이 신협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신협에 책임이 있을 경우 신협은 이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신협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지연배상금 = 반환금액 × 배상이율 × 경과일수/365(배상이율은 결제계좌의 예금이율)
-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신협은 이용대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결과에 따릅니다.

제11조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회원은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협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 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협이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는 신협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1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하게 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 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 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유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④ 회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전에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신협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신협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신협이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

카드의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신협에 있습니다. 다만, 신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를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자동이체 결제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신협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신협이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신협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2016. 6. 7 개정>

제14조 (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

- ① 신협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호 내지 제8호는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만 적용)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3.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6.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7.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8.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② 신협은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③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의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신협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④ 1년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신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탈회 의사 확인 후 탈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서면으로 탈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카드이용의 제한)

- ① 회원은 카드를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신협은 회원의 결제계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금잔액에 상관없이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등록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 가능 잔액 (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이용 잔액 포함) 부족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신협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 ③ 온라인 마감, 결산, 전산시스템점검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 가맹점의 사정 등에 따라 카드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 ① 신협은 이 계약과 관련해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퇴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되지 않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 ② 가맹점과 회원이 체크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양자간 또는 신협과 제휴하고 있는 국내(해외)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카드이용대금의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협 또는 신협과 제휴하고 있는 국내(해외)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신협은 관련법규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의 약관에 의한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7조 (캐시백 및 기타 서비스)

- ① 신협은 신협이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 사용시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시백 등으로 지급 또는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계좌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 캐시백은 신협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 ②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신협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2. 신협이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③ 신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2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④ 신탁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신탁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2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2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제18조 (약관변경 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신탁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탁은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② 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가 신탁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변경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④ 회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단의 기간 안에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여·수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0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신탁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7월 1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되고 있던 내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동 약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7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되고 있던 내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동 약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캐시백 및 기타서비스) 제17조 제2항은 2014년 12월 26일 이후 출시되는 카드상품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제17조 2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4년 12월 25일까지는 1년, 12월 26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는 5년, 2016년 1월 31일부터는 3년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되고 있던 내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동 약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적용되고 있던 내용은 시행일 이후부터 동 약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